



추 가 약 정 서

(B2B구매자금대출-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의 B2B구매자금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년 월 일 자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한국씨티은행B2B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 (이하 "서비스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

제 1 조 (대출의 신청 및 실행시기)

대출의 신청 및 실행 시기는 본인이 이용하는 MP(Marketplace)(이하 "e-MP"라 한다)의 특성에 따라 다음 중 택일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 **지급승인방식** : 대출은 e-MP에서 체결한 본인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한 지급청구가 은행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은행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적 형태로 신청하기로 하며, 은행은 본인이 아래 제9조에 의한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인의 신청 즉시 대출을 실행하여 제8조의 결제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 **자동승인방식** : 본인의 대출신청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e-MP에서 체결한 본인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한 지급청구가 은행에 도착한 날에 은행이 본인 명의의 대출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제8조의 결제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구매대금 추심 의의사항 통지)

- 지급승인방식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e-MP를 통해 은행에 전송하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은행이 접수 받은 때에는 그 대금 청구사항을 은행과 사전에 협의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자동승인방식의 경우에는 은행은 제1항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본인 앞 통지를 생략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구매기업의 지급승인 통지)

- 지급승인방식의 경우에는 본인은 제1조에 의하여 은행의 인터넷에 게시된 추심의뢰건의 결제예정일까지 지급승인 또는 지급거절 하기로 하며, 본인이 결제예정일까지 은행에 지급승인 또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지급거절로 간주합니다.
- 자동승인방식의 경우에는 본인이 e-MP에서 판매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을 은행이 통보 받는 즉시 본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지급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대출금액)

은행은 제1조에 의해 전송 받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기재된 추심의뢰금액(매매계약서의 결제예정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합니다.

제 5 조 (대출 이자율)

- 대출이자율은 대출기간별로 각 대출 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 고시하는 CD수익률에 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3개월마다 변경되며, 대출 기간별 가산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간	가 산 금 리
일 이내	%
일 이상 ~ 일 이내	%
일 이상 ~ 일 이내	%
일 이상 ~ 일 이내	%
일 초과	%

(주)한국씨티은행

CR-A-588 (2024.4.15) 심의필 2404-02-028

- ② 기한 전 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의 변제기)

- ① 본인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변제기(매매계약서의 만기일)에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변제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대출실행일의 매월 해당일(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달 말일)에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e-MP를 통하여 은행에 전송되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변제기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제8조에서 정한 결제계좌로부터 제1항의 대출원리금 상환일에 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상환대상금액을 인출하여 해당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구매대금 지급)

은행은 대출이 실행된 후 결제계좌의 잔액 중 추심의뢰금액 상당액을 자동 인출하여 판매기업과 은행이 별도로 정한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제 8 조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이체)

- ①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제7조에 따라 판매기업에 이체할 계좌는
은행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인 계좌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계좌는 본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 거래정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B2B구매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2. 본인이 은행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3. 본인에 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본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B2B구매자금대출이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본인에 관하여 은행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은행이 본인의 판매기업 또는 e-MP와 약정을 해지한 경우

제 10 조 (면책)

은행은 e-MP로부터 전송 받은 매매계약내역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되며, 분쟁은 본인과 e-MP 그리고 판매기업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B2B구매자금대출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다음의 정보를 판매기업 또는 e-MP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본인 및 대표자의 대출한도·대출잔액·연체내역
2. 본인 및 대표자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3. 본인 및 대표자의 금융결제원 부도정보

제 12조(적용순서)

이 약정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서비스 이용약관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제 13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약정서 제11조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함.

본인 : (인)